

[별표 2] <개정 2004.4.20, 2006.5.3>

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(제3조의2제2항관련)

가스용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압력조정기(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) 및 가스누출자동차 단장치
- 1의2. 정압기용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필터(정압기에 내장된 것을 제외한다)
- 1의3. 매몰형정압기
2. 호 스
3. 배관용밸브(볼밸브 및 글로우브밸브에 한한다) 및 콕
4. 배관이음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
 - 가. 전기절연이음관
 - 나.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
 - 다. 이형질이음관(금속관과 폴리에틸렌관을 연결하기 위한 것)
 - 라. 컵카플러
 - 마. 세이프티커플링
5. 강제혼합식가스버너(제6호에 의한 온수보일러 및 냉난방기에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)
6. 연소기(연소장치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시간당 가스 소비량이 20만kcal 이하인 것에 한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)
7.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(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8. 로딩암
9. 연료전지(시간당 가스소비량이 20만kcal 이하인 것에 한한다. 이하 같다)